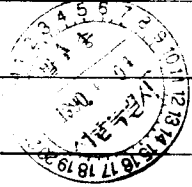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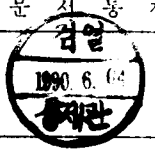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개 30320-1270	(전화 : 731-6353 )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90.6.4		
보조 기 관	도시계획국장	전길	문 신 통 제  검 열  1990.6.04 공 관  발 송 일
	도시개발과장	지	
	환지계장	박	
기안책임자	노경찬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신 명의	시 장
제 목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에 따른 공람공고		

최승의



원본  
파송  
일

제1안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같은건

1. 우리시에서 '90.6 사업시행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영동토지구획 정비사

업 지구중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반포, 압구정 아파트 지구내 일부 공공시설(도로, 공원)의  
미설치와 아파트지구 잔여지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지연되어 부득이 '90.12.31까지 환지확정 처분의 연기가 불가 함으로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12조(관계서류의 공람)및 제14조(규약 또는 사업계획  
의 변경), 같은법 시행령 제4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기

K-1

연기)인가에 따른 공람공고코저 합니다.

가. 사업계획(기간연기) 내용

지구명	시 행 면 적	시행자	사업시행 기간		비 고
			당 초	변 경	
영동지구	26,764,872.9m <sup>2</sup> 중	서울특별시	68.1.18	68.1.18-	6개월 연장
	5,421,066.6m <sup>2</sup>		90.6.30	90.12.31	

나. 공고 개요

- 1) 공고종별 : 일간지 2개사 및 시보계제
- 2) 소요예산 : 2,710,400원  
(35,000원 X 4단 X 8.8cm X 2사 X 1.1)
- 3) 지출과목 : 계속지구, 영동토지, 사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 4) 지출방법 : 공고후 청구에 의하여 지불

제 2 안

공 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338 호

262 1905 26 146 호  
 30. 11.20 00.20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에 따른 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6호('68.1.18) 및 제8호('68.1.23), 제77호('71.8.24)로

사업시행인가된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지구중 환지확정 처분 미완료된 반포, 압구정아파트

지구역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12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 인가코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관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국

관계인에게 보이며, 개별통지는 본공고로 갈음합니다.

1990. 6. 4

서울특별시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 내용

지구명	시행 면적	시행자	사업시행 기간		비고
			당 초	변경	
영동지구	26,764,872.9m2증 5,421,066.6m2	서울특별시	'68.1.18- '90.6.30	'68.1.18 '90.12.31	6개월 연장

제 3 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같은건

1. 우리시에서 사업시행중인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지구내 반포, 압구정아파트

지구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사본)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기간연기)인가에 따른 공람공고하였  
기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원본  
대소  
필  
필

부 : 공고문(사본) 1부. 끝.

수신처 : 종합건설본부장(토목부장), 강남구청장(도시정비과장), 서초구청장(도시정비과장)

관재과장.

제 4 안

수신 : 공보관

발신 : 도시개발과장

제목 : 공고 게재 의뢰

1505-25(2-2)일(1)을  
85. 9. 9.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m<sup>2</sup>  
가 40-41 (1988. 9. 23)

“내가야면 종이 한장 들어나는 나라산림”

